

case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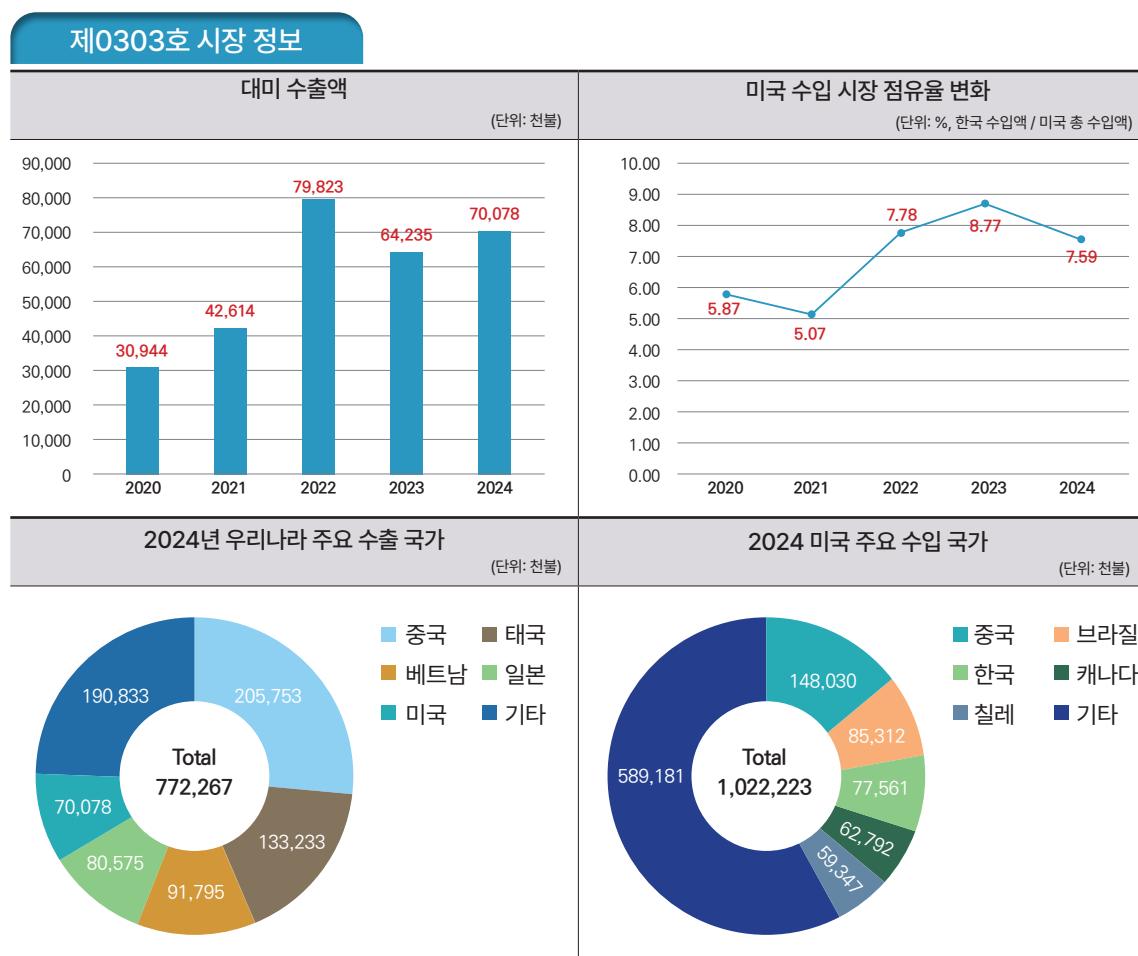
냉동 어류 (제0303호)

요약

사례명	냉동 어류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
사례번호	HQ H331430 (2023.09.27.)
사실관계	캐나다 국적 어선에 의해 캐나다 알래스카만에서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중국 FTZ으로 수출한 후, 5가지 제품(A,B,C,D,E)으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제품 A,B,C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캐나다산으로 판정하며, 제품 D,E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국산으로 판정</p> <p>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중국산으로 판정된 제품 D,E는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</p>
근거법령	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 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 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

I 품목개요

품목정보		
HS Code	제0303호	
세율	한국 기본세율	10%
	미국 기본세율	0% or 15% or 1.1¢/kg
	한-미 FTA 협정세율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- [참고] 제3류 주: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. 	



❖ 자료: K-stat

II 판정사례

사례명 [냉동 어류]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

사례번호 HQ H331430 (2023.09.27.)

사실관계

요청자 West Sea Family Fishery Group Co.

제품	제품명	• 제품 A, B, C, D, E
	구성	• Pacific Ocean Perch (Sebastes Alutus)(캐나다산) • Black Cod (Anoplopoma Fimbria)(캐나다산) • Pacific Cod (Gadus Macrocephalus)(캐나다산)
	원재료 HS Code	• 냉동 어류(제0303호)
	완제품 HS Code	• 제품 A, B, C(제0303.89호) • 제품 D, E(제0304.95호)

제조공정



상세공정 1. 캐나다 알래스카만(Gulf of Alaska)에서 캐나다 국적 어선에 의해 포획

- 캐나다 알래스카만(Gulf of Alaska)에서 캐나다 국적 어선에 의해 포획
- 캐나다에서 냉동 처리
- 중국 자유무역지대(FTZ)로 운송
- 냉동 어류를 다음과 같은 5가지 제품으로 가공

제품	가공 공정
A	비늘, 아가미 및 내장 제거
B	비늘, 아가미 및 내장 제거 후 생선을 펼치는 작업 수행(뼈와 눈은 그대로 유지)
C	비늘, 아가미, 내장 및 머리 제거
D	필레(fillet) 조각으로 절단
E	다르네(darne) 형태로 절단

5. 각 제품을 다음의 방식으로 포장

제품	포장 방식
A,B,C	진공 포장된 플라스틱 백에 포장
D,E	소매용 종이 상자에 포장

6. 미국으로 수출

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- ✓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관련 법령 및 분석



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- ▣ 『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』에 따르면,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, 지워지지 않게,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돼야 하며,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
- CBP 『19 C.F.R. § 134』 규정은 『19 U.S.C. § 1304』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,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

- ❶ 어류가 필레(fillet)로 가공되는 경우, 해당 제품은 물고기의 본래 형태(essential shape)를 상실한 별개의 상업적 제품(discrete commercial good)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

❖ 참고 판례: *Koru North America v. United States*, 701 F. Supp. 229, 232 (Ct. Int'l Trade 1988)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NY N320603, NY N284246 및 HQ H311331*

- ❷ 어류의 단순 가공(해동, 내장 제거, 비늘 제거, 냉동 등)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음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NY N304050 및 NY R04129*

제품 A,B,C 판정 결과

- ▣ 내장, 비늘, 머리 제거 등의 공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제품이 여전히 물고기의 본래 형태(essential shape)를 유지하고 있고, 해당 공정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(name)이나 성질(character)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

제품 D,E 판정 결과

- ▣ 최종 제품이 필레(fillet) 및 다르네(darne) 형태로 절단된 경우, 물고기 본래 형태(essential shape)와는 다른 별개의 상업적 제품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

2

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관련 법령 검토

- ▣ USTR은 『Section 301(b) of the Trade Act of 1974』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%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,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

판정 결과

- ▣ 제품 D, E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여 중국산으로 판정하며, 해당 물품은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

결론

- ✓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 A,B,C는 캐나다산으로 표시하며, 변형이 발생한 제품 D,E는 중국산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임

③ 시사점

- 포획 후 그대로 냉동한 어류를 가공한 경우,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물고기 본래 형태(essential shape)와는 다른 별개의 상업적 제품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

④ 참고자료

- CBP Ruling HQ H311331 (2020.12.1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H311331>
- CBP Ruling HQ H331430 (2023.09.27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H331430>
- CBP Ruling NY N284246 (2017.04.0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284246>
- CBP Ruling NY N304050 (2019.05.28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04050>
- CBP Ruling NY N320603 (2021.08.1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20603>
- CBP Ruling NY R04129 (2006.06.15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R04129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Koru North America v. United States, 701 F. Supp. 229, 232 (Ct. Int'l Trade 1988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474459/koru-north-america-v-united-states/?q=Koru+North+America+v.+United+States>
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2411&num=0&edition=prelim>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19+USC+1304&f=treesort&fq=true&num=47&hl=true&edition=prelim&granuleId=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>